

2020. 10. 14.(수) 10:00

제283회 달성군의회(임시회)
제 2 차 본회의

검 토 보 고 서



달 성 군 의 회

2020년도 (재)달성장학재단 출연금 변경 계획안 검 토 보 고

I. 개 요

1. 제 출 일 : 2020년 10월 6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

3. 제안이유

-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대구광역시 달성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4. 주요내용

- (재)달성장학재단 장학기금 출연 : 310백만 원
 - 2020년 군 금고 출연 협력사업비(농협 3억 원, 대구은행 1천만 원)를 달성장학재단 장학기금으로 출연
 - 관내 지역 학생들을 위한 장학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인재들의 면학을 지원함으로써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고 달성군을 빛낼 훌륭한 인재들을 발굴 및 양성

5. 출연 심의요구서

6. 사업부서 검토의견서

7. 참고자료

- 출연기관 현황
- 관계 법령

출연 심의요구서

출 연 대 상	○ 기 관 명 : (재)달성장학재단 ○ 대 표 : 김 문 오 ○ 소 재 지 :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달성군청로 33 ○ 기본재산 : 24,246백만 원																					
출 연 사업비	○ 출연 예정금액 : 310백만 원(군비) ○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단위 : 백만원)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head> <tr> <th rowspan="2">구 분</th><th rowspan="2">사업 기간</th><th rowspan="2">2020년 제2회추경</th><th colspan="5">재 원 별</th></tr> <tr> <th>계</th><th>국비</th><th>시비</th><th>군비</th><th>기타</th></tr> </thead> <tbody> <tr> <td>장학사업 (기본재산증자)</td><td>2020년</td><td>310</td><td>310</td><td>-</td><td>-</td><td>310</td><td>-</td></tr> </tbody> </table>	구 분	사업 기간	2020년 제2회추경	재 원 별					계	국비	시비	군비	기타	장학사업 (기본재산증자)	2020년	310	310	-	-	310	-
구 분	사업 기간				2020년 제2회추경	재 원 별																
		계	국비	시비		군비	기타															
장학사업 (기본재산증자)	2020년	310	310	-	-	310	-															
출 연 필요성	○ (재)달성장학재단 정관 제4조(사업) 제2항에 따라 장학금 지급을 위하여 현금예치에 의한 이자수익사업으로 목적사업 경비를 조달함. ○ 현재 장학기금으로는 지속적인 인구증가로 인해 늘어나는 장학금 수요를 감당할 수 없으므로 이에 맞게 장학기금을 조성하여 주민들의 장학금수요에 대응할 필요가 있음.																					
근 거 법 령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지방재정법 ○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단법인 달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사업부서 의 견 (총평)	○ 우리군 우수인재를 양성하고 면학 분위기를 높이기 위하여 출연금을 증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사업부서 검토의견서

1. 외부기관 지적사항

- (재정사업평가 및 감사결과)
- 해당사항 없음

2. 출연금 예산요구액 부서 의견

- (재)달성장학재단 기본재산 증자를 위한 달성군 출연 : 310백만 원
-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310백만 원
- 급증하는 달성군민과 더불어 장학금 수요도 증가함에 따라 군 출연금으로 기본재산을 증자하여, 더 많은 이자수익으로 많은 학생들에게 장학금 혜택을 주고자 함.

3. 출연금 검토 상세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년 출연액	2020년 출연액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관 요구액(A)	부서 검토액 (B)	증감 (B-A)
총 계	3,320	4,000	310	310	0
기관운영비	해 당	사	항	없	음
인건비					
경상비					
사업비					
장학사업 (기본재산증자)	3,320	4,000	310	310	0

출연기관 현황

기 관 명	(재)달성장학재단				전화번호	053-668-3982	
					홈페이지	www.dsjanghak.or.kr	
설립근거	법 률 : 민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 례 :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단법인 달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주요연혁	설립연도 : 2000년 설립허가년월일 : 2000. 4. 4. 법인성립년월일 : 2000. 4. 26.						
임원 (20. 10. 1 현재)	직책	성명	주요경력			임기	
	이사장	김문오	달성군수(당연직)			2010. 7. 1 ~ 재임기간	
	비상임이사	정기호	농협달성군지부장(당연직)			2018. 1. 1 ~ 재임기간	
	비상임이사	석재추	前 옥포번영회 회장			2019. 6. 21~ 2023. 6. 20	
	비상임이사	서정우	前 달성군의원			2016.12.24 ~ 2020.12.23	
	비상임이사	곽두섭	前 유가농협장			2016.12.24 ~ 2020.12.23	
	비상임이사	박명규	前 자유총연맹 달성군지부장			2016.12.24 ~ 2020.12.23	
	비상임이사	김길종	자동차보험			2016.12.24 ~ 2020.12.23	
	비상임이사	조성래	논공읍 체육회 이사			2020. 1. 8 ~ 2020.12.23	
	비상임이사	신창섭	자영업			2016.12.24 ~ 2020.12.23	
	비상임이사	김동조	前 가창새마을금고이사장			2016.12.24 ~ 2020.12.23	
	비상임이사	이대현	농업			2016.12.24 ~ 2020.12.23	
	비상임이사	박지팔	구지사회안전망 구지면 회장			2016.12.24 ~ 2020.12.23	
	비상임감사	채수열	前 현풍고 행정실장			2019. 6.21 ~ 2021. 6.20	
	비상임감사	임동화	달성군 회계과장(당연직)			2019. 7. 1 ~ 재직기간	
주요기능	학업성적이 우수하면서도 가정형편이 어려워 학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각 분야에서 뛰어난 성적으로 달성군을 빛낼 훌륭한 인재들의 면학을 돕기 위한 장학사업과 학술연구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훌륭한 인재를 발굴·양성함을 목적으로 함.						
최근3년간 예산현황	연 도	2018년	2019년	2020년	재무현황 2019.12.31. 기준	자산	20,588백만원
	예산액	3,446백만원	3,626백만원	4,649백만원		부채	340백만원
	지자체 지원액	3,010백만원	3,320백만원	4,000백만원		자본	20,248백만원

1. 예산액은 해당 기관의 매 회계연도별 확정된 예산액
2. 지자체 지원액은 해당 기관 예산액중 지자체가 보조한 금액

II. 검토의견

2020년도 (재)달성장학재단 출연금 변경 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본 (재)달성장학재단의 출연금 변경 계획안은 금번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출연금 3억1천만 원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달성군의회 의결을 얻기 위함임.
- 출연금의 주요내용은 군 금고 출연 협력사업비 농협은행 3억원, 대구은행 1천만원, 합계금액 3억1천만원이며,
- 본 출연금은 (재)달성장학재단 2020년 장학기금 기 보유액 242억4천6백만원과 함께 기본재산으로 편입하여 그 수익으로 장학사업에 쓰여지게 됨.
- 급증하는 달성군민과 더불어 장학금 수요도 증가함에 따라 군 출연금으로 기본재산을 증자하여, 더 많은 이자수익으로 많은 학생들에게 장학금 혜택을 주고자 함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

이상으로, 2020년도 (재)달성장학재단 출연금 변경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문화, 예술, 장학(장학),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2.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비율을 산정할 때에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출자·출연 기관이 출자하거나 출연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것으로 본다.

③ 출자·출연 기관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설립 목적
2. 주요 업무와 사업
3. 출자 또는 출연의 근거와 방법
4. 그 밖에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단법인 달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기금출연) ① 군수는 재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군수가 출연한 기금의 원금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기본재산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안 자 : 달성군수

2. 제안이유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3.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의 배경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민생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으로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비의 조정·가용재원의 분석을 통하여 취약계층의 피해 회복과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각종 보조금의 반영·필수 경비 및 현안사업 마무리를 위한 소요예산을 반영하고자 함.

4. 예산총괄

1) 회계별 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추경예산액	기정예산액	증 감
총 계		1,004,600	938,000	66,600
일 반 회 계		995,400	929,000	66,400
특 별 회 계		9,200	9,000	200
	폐기물처리시설사업	2,833	2,767	66
	의료급여기금	770	663	107
	기반시설	118	118	0
	치수사업	5,478	5,451	27

2) 회계별 세입총괄

(단위 : 백만원)

구분	장 관 별	추경예산액	기정예산액	증 감	증감율(%)
총 계		1,004,600	938,000	66,600	7.10
일반회계	계	995,400	929,000	66,400	7.15
	지방세수입	194,676	177,676	17,000	9.57
	세외수입	36,818	34,525	2,293	6.64
	경상적세외수입	24,793	24,187	605	2.50
	임시적세외수입	12,025	10,337	1,688	16.33
	지방교부세	139,862	143,935	△4,073	△2.83
	조정교부금등	27,434	26,419	1,015	3.84
	보조금	470,232	420,254	49,978	11.89
	국고보조금등	335,558	311,180	24,378	7.83
	사·도비보조금등	134,674	109,073	25,601	23.47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26,377	126,190	187	0.15
특별회계		9,200	9,000	200	2.22

3) 회계별 세출총괄

■ 기 능 별

(단위 : 백만원)

구분	분야별	추경예산액	기정예산액	증 감	증감율(%)
총 계		1,004,600	938,000	66,600	7.10
일반회계	계	995,400	929,000	66,400	7.15
	일반공공행정	141,629	113,830	27,798	24.42
	공공질서및안전	5,162	5,152	10	0.19
	교육	10,090	11,479	△1,389	△12.10
	문화및관광	36,855	36,005	850	2.36
	환경보호	24,195	25,095	△900	△3.59
	사회복지	354,118	331,982	22,135	6.67
	보건	29,548	29,335	213	0.73
	농림해양수산	46,713	47,313	△600	△1.27
	산업·중소기업	19,237	19,155	82	0.43
	교통및물류	131,556	126,105	5,451	4.32
	국토및지역개발	68,850	66,536	2,314	3.48
	예비비	7,250	1,952	5,298	271.38
	기타	120,196	115,055	5,141	4.47
특별회계		9,200	9,000	200	2.22

■ 성 질 별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액	기정예산액	증 감	증감율(%)
총 계		1,004,600	938,000	66,600	7.10
일 반 회 계	계	995,400	929,000	66,400	7.15
	인건비	96,794	89,005	7,788	8.75
	물건비	44,254	46,351	△2,097	△4.52
	경상이전	558,760	520,638	38,121	7.32
	자본지출	257,140	245,048	12,092	4.93
	시설비및부대비	232,924	222,096	10,828	4.88
	민간자본이전	10,436	10,644	△208	△1.96
	자치단체등자본이전	4,323	4,319	2	0.07
	공사공단자본전출금	1,019	966	53	5.44
	자산취득비	8,439	7,021	1,418	20.19
	융자및출자	0	10	△10	순감
	내부거래	21,663	21,636	27	0.13
	예비비및기타	16,788	6,309	10,479	166.08
	예비비	7,530	1,952	5,578	285.72
	반환금기타	9,258	4,357	4,901	112.48
특 별 회 계		9,200	9,000	200	2.22

4)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주요사업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2020 년도 본예산	증감액	2020 년도 제2회	비고
기획예산실	사랑 품은 태교콘서트	20	-20	0	
기획예산실	재해·재난 예비비	736	5,578	6,314	
법무감사실	소송사건 변호사 수임료	60	15	75	
법무감사실	소송사건 패소에 따른 소송비용 등 배 상금	50	10	60	
자치행정과	대구희망지원금 전산장비 임차 및 사무용품 구입 등(예산성립전 사용)	0	53	53	보조
자치행정과	대구희망지원금(예산성립전 사용)	0	25,810	25,810	보조
자치행정과	통일역량강화 사업	25	-15	10	
자치행정과	교육훈련기관(중앙)교육원 위탁교육비	45	-25	20	
자치행정과	대구시공무원교육원 위탁교육비	50	-30	20	
자치행정과	5급 승진리더과정 위탁교육비 (기본교육)	22	-11	11	
자치행정과	공무원 조직활성화 한마음 위탁 교육	121	-121	0	
자치행정과	공무원 교육훈련여비	227	-135	92	
자치행정과	공무원 역량강화 국외연수	90	-82	8	
자치행정과	공무국외출장 지원	80	-60	20	
자치행정과	군정발전 유공 공무원 국외연수	90	-82	8	
자치행정과	긴급생계자금 등 이·통장 활동수당 (예산성립전 사용)	0	31	31	보조
자치행정과	모범이장 해외선진지 연수	55	-55	0	
자치행정과	이장 화합한마당 행사	10	-10	0	
세무과	사무환경개선 공사	0	22	22	보조
정보통신과	문서발송 우편료	132	50	182	
정보통신과	스마트시티 플랫폼 구축(공모사업)	0	1,350	1,350	보조

부서명	사업명	2020년도 본예산	증감액	2020년도 제2회	비고
정보통신과	대구국가산업단지 생활안전서비스 시스템 구축사업	0	1,462	1,462	
정보통신과	다목적용 CCTV 설치	322	300	622	
일자리경제과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1,100	80	1,180	
일자리경제과	공공근로사업	2,262	-645	1,617	보조
일자리경제과	마을기업 육성사업(예산성립전 사용)	0	21	21	보조
일자리경제과	희망일자리 인건비(예산성립전 사용)	0	8,303	8,303	보조
일자리경제과	희망일자리홍보현수막제작및 소모품 구입 등(예산성립전 사용)	0	77	77	보조
일자리경제과	작업도구 및 안전장비 등 구입 (예산성립전 사용)	0	419	419	보조
일자리경제과	코로나19 극복 지역일자리사업 (예산성립전 사용)	0	423	423	보조
일자리경제과	청년창업지원센터 건립 관련 토지 매입	0	700	700	
환경과	악취시료 자동채취장치 (예산성립전 사용)	0	45	45	보조
농업정책과	마늘 긴급가격안정 지원사업	0	83	83	
농업정책과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	310	-84	226	보조
농업정책과	시설원예 난방기 지원	53	-35	18	보조
농업정책과	장기성 필름 지원	332	141	473	보조
농업정책과	자동선별기 지원	90	84	174	보조
청소위생과	환경공무직 방한복(특별조정교부금)	0	15	15	
청소위생과	가로휴지통 구입	11	-11	0	
청소위생과	환경공무직 안전교육	20	-20	0	
청소위생과	환경공무직 맞춤형 복지제도	224	-30	194	
청소위생과	모범 환경공무직 산업시찰	10	-10	0	
청소위생과	재활용품선별장 현대화사업	3,000	-500	2,500	
청소위생과	환경공무직 퇴직금	600	-300	300	

부서명	사업명	2020년도 본예산	증감액	2020년도 제2회	비고
공원녹지과	다사 만남의 광장 리모델링	99	-40	59	
공원녹지과	지하수 연장허가 및 사후관리	0	11	11	
공원녹지과	교량 꽃길 조성(간경교 등 6개소)	99	-20	79	
공원녹지과	해충방제 시스템 임대료(6개월)	20	-17	3	
공원녹지과	공영화장실 상수도 인입 및 리모델링	99	-11	88	
공원녹지과	용연사집단지구 내 절개지 축대정비	100	-100	0	
공원녹지과	비슬산 공영주차장 우레탄바닥 교체	50	-26	24	
공원녹지과	옥연지 송해공원 조명분수 조성공사	998	-100	898	
공원녹지과	기세1,2 소공원 조성	100	-53	47	
공원녹지과	부리어린이공원 조성	1,500	1,700	3,200	
공원녹지과	시설관리공단(회원휴양림)자본 진출금	23	16	39	
공원녹지과	둘레길 보완사업	199	35	234	
공원녹지과	산불감시초소 유류 구입	39	-15	24	
공원녹지과	산불무인감시카메라 교체	0	30	30	
공원녹지과	참꽃군락지 정비	149	-50	99	
공원녹지과	카드 결제 시스템 수수료	33	-15	18	
복지정책과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시비)	1,038	40	1,078	보조
복지정책과	국가유공자 보훈예우수당	498	80	578	보조
복지정책과	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 (예산성립전 사용)	63	34	97	보조
복지정책과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무원 중식비	213	-38	175	보조
복지정책과	기초연금 지급	66,306	1,569	67,875	보조
복지정책과	노인맞춤돌봄서비스	2,316	43	2,359	보조
복지정책과	폭염취약계층 냉방용품 지원 (예산성립전 사용)	0	64	64	보조

부서명	사업명	2020년도 본예산	증감액	2020년도 제2회	비고
복지정책과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공익활동)	3,437	-600	2,837	보조
복지정책과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공익활동 상품권 추가지원)	0	600	600	보조
복지정책과	시니어클럽 특성화사업 (예산성립전 사용)	0	50	50	보조
복지정책과	대구형 경로당 리모델링(시설비)	0	90	90	보조
복지정책과	대구형 경로당 리모델링(자신취득비)	0	10	10	
복지정책과	달성여성대학 운영	50	-50	0	
복지정책과	여성취업 및 창업 기능교육	30	-10	20	
복지정책과	여성지도자 해외연수	18	-18	0	
복지정책과	양성평등주간 기념식 등	20	-20	0	
복지정책과	저소득 한부모 가족자녀 교복비 지원	24	12	36	
복지정책과	아이돌봄 지원사업	2,037	-77	1,960	보조
복지정책과	다문화가족 캠프	10	-10	0	
복지정책과	다문화가족 친정방문 및 엄마나라 이 해하기	32	-32	0	
복지정책과	여성문화복지센터 카드 징수 수수료	65	-40	25	
복지정책과	영유아 보육료 지원	35,935	4,262	40,197	보조
복지정책과	만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5,668	1,834	7,502	보조
복지정책과	유아보육료 차액지원	721	78	799	보조
복지정책과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13,855	125	13,980	보조
복지정책과	만 3~5세 누리과정 담임수당 등 지원	1,965	639	2,604	보조
복지정책과	어린이집 종사자 선진지 견학	20	-20	0	
복지정책과	보육교직원 체육대회	20	-20	0	
복지정책과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역량강화 사업	20	-20	0	

부서명	사업명	2020년도 본예산	증감액	2020년도 제2회	비고
복지정책과	보육시설 교재교구비 지원	82	18	100	보조
복지정책과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지원(국비사업)	294	-60	234	보조
복지정책과	장난감도서관 운영비(7개소)	1,056	-206	850	
복지정책과	담임교사지원비	3,440	-338	3,102	보조
복지정책과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	3,049	121	3,170	보조
복지정책과	국공립 구지어린이집 환경개선	0	250	250	
생활보장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해산 및 장제 급여 지원	143	57	200	보조
생활보장과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예산성립전 사용)	4,820	100	4,920	보조
생활보장과	복지용 양곡공급 택배비 지원	137	37	174	보조
생활보장과	자활근로사업(근로유지형)	568	-158	410	보조
희망지원과	자원봉사자 한마음 대회 등	25	-25	0	
희망지원과	긴급복지 지원	11,716	-585	11,131	보조
희망지원과	행복복지한마당	35	-35	0	
희망지원과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예산성립전 사용)	2,031	17	2,048	보조
희망지원과	탈시설 장애인 자립정착금 지원	10	-10	0	보조
희망지원과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시비추가지원	176	-90	86	보조
희망지원과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1,606	151	1,757	보조
희망지원과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서비스지원	239	-134	105	보조
희망지원과	신체·인지·정서 프로그램운영지원	134	-35	99	
희망지원과	다함께돌봄센터 리모델링	150	-150	0	보조
희망지원과	아동양육한시지원사업 (아동특별돌봄지원)(예산성립전 사용)	0	4,016	4,016	보조
희망지원과	아동급식(방학중 중식)지원	431	709	1,140	보조
희망지원과	아동급식(학기중 중식)지원 (예산성립전 사용)	420	200	620	보조

부서명	사업명	2020년도 본예산	증감액	2020년도 제2회	비고
교통과	현풍 북카페 두런두런 운영 강사료	135	-135	0	
교통과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보수 (단가계약)	250	200	450	
교통과	교통신호기 설치 및 정비(단가계약)	250	250	500	
교통과	스쿨존 등 교통약자보호구역정비 (상생협력지수 인센티브)	150	50	200	특조금 20백만원
교통과	차선 및 횡단보도 정비(단가계약)	250	150	400	
교통과	주차금지 표지판 설치 및 정비	35	15	50	
교통과	노상 주차선 설치 및 정비	38	22	60	
건설과	화원 천내리(주원교회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	1,000	20	1,020	잔여매수 보상비
건설과	화원 성산1리(마을회관 북편) 도시계획도로 개설	0	15	15	전주이설 공사비
건설과	화원 본리2리 1170번지선 도시계획도로 개설	2,000	950	2,950	공사비
건설과	화원 본리2리 1170번지선 도시계획도로 개설	0	100	100	감리비
건설과	화원 천내리 662-2번지선 외 1개소 도시계획도로 개설	400	70	470	잔여매수 보상비
건설과	화원 본리1리 479번지선 도시계획도로 개설	500	-150	350	
건설과	화원 본리4리(46-10번지선 외 1개소) 도시계획도로 개설	0	110	110	공사비
건설과	화원 본리리(661-1번지선) 도시계획도로 개설	50	20	70	용역비
건설과	화원 성산리(29-3번지선) 도시계획도로 개설	2,200	-500	1,700	
건설과	논공 위천1리 위천1길 도시계획도로 개설	100	100	200	공사+보상
건설과	논공 위천리 위천삼거리옆 도시계획도로 개설	500	-200	300	
건설과	논공 위천그린공단 중앙길 도시계획도로 개설	1,400	350	1,750	보상비
건설과	논공 하2리 정골 도시계획도로 개설	650	150	800	보상비
건설과	논공 상리 770번지선 도시계획도로 개설	0	50	50	보상비
건설과	논공 북리3길 도로구조개선	400	-400	0	
건설과	다사 박곡리 마을 주진입 도시계획도로 개설	0	250	250	공사비

부서명	사업명	2020년도 본예산	증감액	2020년도 제2회	비고
건설과	다사 이천리 마을안길 도시계획도로 개설	200	400	600	공사+보상
건설과	다사 매곡리 다사초등학교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	1,400	-1,000	400	
건설과	다사 죽곡2리 강정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	0	70	70	공사+보상
건설과	다사 서재리 하늘소망교회 뒤편 도시계획도로 개설	700	100	800	공사+보상
건설과	옥포 간경2길 도시계획도로 개설	600	50	650	공사+보상
건설과	옥포 신당리(신당2길) 도시계획도로 개설	250	50	300	공사+보상
건설과	옥포 교항1리 교항5길 도시계획도로 개설	350	200	550	공사+보상
건설과	옥포 본리2리 2307-6번지 도시계획도로 개설	250	150	400	공사+보상
건설과	옥포 강림1리 900번지선 도시계획도로 개설	120	100	220	공사+보상
건설과	옥포 본리리 913번지선 외 1개소 도시계획도로 개설	600	50	650	공사+보상
건설과	옥포 강림1리 876번지선 도시계획도로 개설	100	-50	50	
건설과	옥포 본리1리 2196번지선 도시계획도로 개설	100	200	300	보상비
건설과	옥포 간경리 808번지선 도시계획도로 개설	500	-50	450	
건설과	옥포 본리1리 금성사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	350	-130	220	
건설과	옥포 강림2리 마을회관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	900	-80	820	
건설과	옥포 송해공원~기세교차로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3,500	500	4,000	공사비
건설과	옥포 송해공원~기세교차로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0	200	200	보상비
건설과	달성군청~옥포강림임대주택단지간 도로건설	3,000	970	3,970	공사+보상
건설과	옥포 교항1리 1263번지선 외 1개소 도시계획도로 개설	300	200	500	보상비
건설과	옥포 강림1리 금봉지 동편 도시계획도로 개설	1,000	250	1,250	보상비
건설과	옥포 강림2리 473번지선 외 1개소 도시계획도로 개설	600	-600	0	

부서명	사업명	2020년도 본예산	증감액	2020년도 제2회	비고
건설과	옥포 본리2리 2500번지선 도시계획도로 개설	500	-450	50	
건설과	옥포 기세리 522번지선 도시계획도로 개설	200	-200	0	
건설과	옥포 김흥리 마을회관 앞 진입 도시계획도로 개설	400	-300	100	
건설과	옥포 김흥2리 마을주진입로 도시계획도로 개설	0	150	150	공사+보상
건설과	옥포 교항1리 1226번지선 외 1개소 도시계획도로 개설	350	50	400	공사+보상
건설과	옥포 신당리 1168번지선 도시계획도로 개설	100	-80	20	
건설과	옥포 신당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200	-100	100	
건설과	옥포 본리리 2403-1번지선 도시계획도로 개설	0	50	50	보상비
건설과	옥포 교항1리(교항2길) 도시계획도로 개설	700	-200	500	
건설과	가창 동부순환도로 개설공사	3,000	-800	2,200	
건설과	가창 단산리(277번지선) 도시계획도로 개설	150	-50	100	
건설과	가창 대일리(73번지선) 도시계획도로 개설	700	400	1,100	보상비
건설과	하빈 감문2리(마을회관앞) 도시계획도로 개설	600	600	1,200	보상비
건설과	하빈 현내2리(하빈로86길) 외 1개소 도시계획도로개설	1,400	-250	1,150	
건설과	하빈 봉촌1리(311-1번지선) 도시계획도로 개설	30	-10	20	
건설과	하빈 무등1리(445-1번지선) 도시계획도로 개설	50	20	70	용역 설계비
건설과	하빈 동곡2리(179-2번지선) 도시계획도로 개설	0	30	30	용역 설계비
건설과	현풍 원교1리 신동아빌라옆 외 1개소 도시계획도로 개설	370	-80	290	
건설과	현풍 달성문화원 옆 도시계획도로 확장	1,500	-1,400	100	
건설과	현풍 성하2리(마을진입로) 도시계획도로 개설	30	35	65	관급자재 부족비
건설과	현풍 상2리(현풍초교옆) 도시계획도로 개설	100	140	240	공사비

부서명	사업명	2020년도 본예산	증감액	2020년도 제2회	비고
건설과	현풍 중1리(영재어린이집 옆) 외 1개소 도시계획도로 개설	320	50	370	공사+보상
건설과	현풍 상1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0	140	140	보상비
건설과	현풍 대1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0	80	80	공사비
건설과	현풍 상1리(현풍향교진입) 도시계획도로 개설	0	13	13	관급자재 부족비
건설과	현풍 원교2리(KT&G옆) 도시계획도로 개설	0	270	270	공사비
건설과	현풍 성하3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0	190	190	공사비
건설과	구지 가천리 마을회관앞 도시계획도로 개설	200	150	350	공사비
건설과	구지 창리(665번지선) 도시계획도로 개설	1,000	-200	800	
건설과	구지 창리(472-2번지선) 도시계획도로 개설	120	200	320	공사+보상
건설과	구지 창리399-3번지선 도시계획도로 개설	220	-70	150	
건설과	구지 창리 555번지선 도시계획도로 개설	180	100	280	보상비
건설과	도로굴착복구	1,500	1,000	2,500	공사비
건설과	도로 긴급보수비	600	150	750	공사비
건설과	화원 설화리 910-4번지선 도로정비	0	170	170	보상비
건설과	화원 명천로 인도보수 (예산성립전 사용)	0	220	220	보조
건설과	논공 금포리 863-1번지 일원 도로정비	0	50	50	용역비
건설과	논공 노이6길 도로정비	0	220	220	공사비
건설과	다사 죽곡리 다사교회 일원 인도정비	30	100	130	공사비
건설과	다사농협 앞 도로정비	200	400	600	공사+보상
건설과	유가 양1리 마을안길정비	250	300	550	보상비
건설과	유가 유곡~도의리 도로 확포장 (구, 유가초등학교)	350	100	450	보상비

부서명	사업명	2020년도 본예산	증감액	2020년도 제2회	비고
건설과	유가 유곡1리(짐실) 마을안길 확포장	50	400	450	보상비
건설과	유가 쌍계리 휴양림길 외 1개소 인도 설치	250	300	550	공사+보상
건설과	유가 한정리 596-85번지선 인도설치	279	-112	167	
건설과	옥포 김흥리 산120번지선 자동염수살포장치 설치	300	100	400	공사비
건설과	옥포 신당리 1150-2번지선 도로정비 공사	90	240	330	보상비
건설과	옥포 기세리 보훈회관 앞 도로정비	200	-198	2	
건설과	현풍 대리 848번지선 외 3개소 도로정비	300	200	500	보상비
건설과	달성군 도동~자모 위험도로 구조개선	100	-43	57	
건설과	구지 화산리 439번지 일원 도로확장	50	100	150	공사+보상
건설과	군도 3호선(기세리 인근)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0	300	300	용역비
안전방재과	배수펌프 유지보수	20	-20	0	
안전방재과	스마트 그늘막 설치(예산성립전 사용)	90	68	158	보조
안전방재과	화원 천내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	1,058	-451	607	
안전방재과	기세곡천 재해예방사업 (특별조정교부금)	11,380	451	11,831	
안전방재과	하천수문관리 민간위탁 (하천수문관리 보조금)	50	-32	18	
안전방재과	소규모 소하천 환경정비	1,194	500	1,694	파손 및 노후 긴급보수
안전방재과	하빈천 환경정비	200	-28	172	
안전방재과	금포천 환경정비	200	-32	168	
안전방재과	금포천 제방도로 포장	240	-54	186	
안전방재과	생태탐방로 운영 및 유지관리	30	10	40	
안전방재과	치수사업특별회계 전출금	30	27	57	
도시과	하빈 현내리 798-1번지 일원 외 1개소 농로정비	120	40	160	

부서명	사업명	2020년도 본예산	증감액	2020년도 제2회	비고
도시과	다사읍 서재리 도시개발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용역	300	-250	50	
도시과	눈꽃(설화)처럼 밝은 설화마을 만들기 프로젝트	0	148	148	보조
도시과	설화1리 마을회관 방송장비 및 회의장비 개선	0	22	22	보조
도시과	구라리 지하차도 진입로 주변 경관개선사업	100	70	170	
도시정비과	2020년 노점상 정비 민간용역 시행	220	-30	190	
도시정비과	하수도 긴급보수	199	140	339	
도시정비과	소규모 수리시설 개보수	400	100	500	
도시정비과	저수지 유지관리	200	150	350	
도시정비과	화원 설화리(1037번지선) 농로확포장 공사	0	30	30	
도시정비과	유가 쌍계2리(328번지선) 농로확포장	150	-65	85	
도시정비과	유가 음리(315번지선) 농로개설	200	-34	166	
도시정비과	유가 한정2리(75-5번지선) 배수로정비	200	-116	84	
도시정비과	옥포 본리1리(1119번지선) 농로개설	50	-24	26	
도시정비과	옥포 김흥리(1067번지선) 농로개설	150	50	200	
도시정비과	옥포 김흥2리(861번지선) 농로개설	200	50	250	
도시정비과	옥포 반송2리(733-1번지선) 농로개설	150	400	550	
도시정비과	옥포 신당리(1319번지선) 농로개설	100	-49	51	
도시정비과	현풍 지1리(1322번지선) 농로확포장	150	-150	0	
도시정비과	현풍 지리(547번지선) 농로정비	150	-143	7	
도시정비과	가창 우록리(66-4번지선) 농로개설	130	20	150	

부서명	사업명	2020년도 본예산	증감액	2020년도 제2회	비고
도시정비과	가창 우록2리(819번지선) 농로개설	400	-58	342	
도시정비과	가창 단산리(281번지선) 농로확포장	200	-111	89	
도시정비과	가창 옥분리(386번지선) 농로개설	150	-63	87	
도시정비과	가창 옥분리(348번지선) 농로개설	100	-94	6	
도시정비과	가창 상원리(542번지선) 농로개설	250	237	13	
도시정비과	하빈 하산2리(71번지선) 농로개설	150	-150	0	
도시정비과	하빈 묘1리(564번지선) 농로정비	100	-37	63	
도시정비과	옥포본리리(1240번지선외2개소)농업 용수 관로설치공사	0	20	20	
도시정비과	유가 한정3리 암반관정 설치	80	-19	61	
도시정비과	옥포 본리2리(2275번지선) 암반관정 설치	80	-11	69	
도시정비과	가창 냉천리(410-2번지선) 암반관정 설치	80	-21	59	
도시정비과	구지 응암리(7-1번지선) 암반관정 설 치	80	-11	69	
도시정비과	배수장 유수지 준설 및 보수	0	100	100	
건축과	2020년도후어린이놀이시설설치·개선 사업 (예산성립전 사용)	0	40	40	보조
토지정보과	지적전산실 서버	0	18	18	
토지정보과	지적기준점 세계측지계 변환 성과 확보	0	41	41	보조
정책사업과	화원공공복합청사 타당성조사	200	-35	165	
정책사업과	달성교육문화복지센터 건립 감리비	200	-200	0	
문화체육과	문화예술행사 지원 물품 임차료	32	-32	0	
문화체육과	각종 행사추진 경비 용역	60	-25	35	
문화체육과	찾아가는 문화 어울마당	60	-60	0	
문화체육과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비	0	400	400	보조
문화체육과	공공미술 프로젝트 운영비	0	11	11	보조

부서명	사업명	2020년도 본예산	증감액	2020년도 제2회	비고
문화체육과	제61회 한국민속예술제 참가지원 (예산성립전 사용)	0	29	29	보조
문화체육과	대구시 생활체육 대축전 참가	23	-23	0	
문화체육과	군민체육대회 종사자 근무복 구입	20	-20	0	
문화체육과	군민체육대회	290	-290	0	
문화체육과	제13회 달성비슬산배 전국동호인 테니스대회	30	-30	0	
문화체육과	2020 달성 사문진, 송해공원 달빛 걷기대회	30	-30	0	
문화체육과	2020 달성비슬산배 전국 파크골프 대회	30	-30	0	
문화체육과	제16회 비슬산 참꽃배 초청 족구대회	30	-30	0	
문화체육과	2020 달성비슬산배 전국 사회인 야구 대회	30	-30	0	
문화체육과	2020 달성비슬산배 OPEN 배드민턴 대회	30	-30	0	
문화체육과	정구부 인건비 및 운영비	1,064	-114	950	
문화체육과	휠체어테니스단 인건비 및 운영비	402	-31	371	
문화체육과	기타체육시설 경상전출금	210	20	230	
문화체육과	달성 테크노 스포츠 센터 건립	700	300	1,000	보조
문화체육과	군민운동장 화장실 수선	30	-30	0	
문화체육과	다사체육공원 생활체육센터 건립	400	2,100	2,500	보조(기금 10억, 특교 세11억)
문화체육과	군민운동장 리모델링 사업	0	100	100	
관광과	달성관광 홍보 기념품	60	-20	40	
관광과	관광지 홍보물 제작	20	-10	10	
관광과	관광지 점검 컨설팅 및 인증사업	50	-50	0	
관광과	달성관광입체지도 제작	20	-10	10	
관광과	주요 관광지 홍보물 제작	20	-10	10	

부서명	사업명	2020년도 본예산	증감액	2020년도 제2회	비고
관광과	참꽃앨리 앱 홍보물 제작	10	-10	0	
관광과	송해공원 풍차일원 경관조성	30	-20	10	
관광과	달성 팸투어 지원사업	50	-50	0	
관광과	관광사업설명회	20	-20	0	
관광과	2020대구경북관광의해 홍보컨텐츠 개발	200	-50	150	
관광과	사문진강맥축제 홍보비	40	-40	0	
관광과	사문진강맥축제	220	-220	0	
관광과	사문진강맥축제 조형물 설치	20	-20	0	
관광과	사문진 역사공원 카드수수료	60	-12	48	
관광과	시설관리공단(사문진역사공원) 경상 전출금	978	140	1,118	
관광과	화원관광지 조성계획 및 토지보상비	2,700	-1,000	1,700	
관광과	캠핑장 조성 설계비	20	-20	0	
관광과	문화재 긴급보수비	200	50	250	
관광과	운흥사 목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 주변 정비(석축 보수)	0	290	290	보조
관광과	도동서원 세계유산 홍보	27	-27	0	
교육청소년과	초등학생 영어마을 체험학습 지원	750	-644	106	
교육청소년과	중학생 영어마을 체험학습 지원	735	-735	0	
교육청소년과	(재)달성장학재단 출연	4,000	310	4,310	
보건과	선택예방 접종비 로타바이러스접종비	559	-280	279	
보건과	선택예방 접종비 대상포진접종비	40	-20	20	
보건과	보건소예방접종약품비 (62~64세 어르신 인플루엔자 보건소 백신비)	312	41	353	보조
보건과	필수예방접종비용 국가부담	4,630	413	5,043	보조

부서명	사업명	2020년도 본예산	증감액	2020년도 제2회	비고
보건과	호흡기전담클리닉 시설비	0	160	160	보조
보건과	호흡기전담클리닉 물품구입 등	0	40	40	보조
보건과	달성군보건소 시설 유지보수비 등	0	15	15	보조
보건과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공사비 등	0	154	154	보조
보건과	보건(지)소, 진료소 청사 수선	20	10	30	
보건과	달성군보건소 이전·신축	810	-372	438	
보건과	공중보건 의사 추가 업무활동장려금	0	180	180	
보건과	초과근무수당	364	289	653	
건강증진과	노인운동교실 강사료	127	-127	0	
건강증진과	노인운동교실 홍보물 등	20	-20	0	
건강증진과	기저귀 지원 및 조제분유 지원	230	161	391	보조
건강증진과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기능보강 공사비	0	22	22	
건강증진과	암환자 의료비 지원	244	60	304	보조
농촌지도과	그린마켓 운영	40	-40	0	
농촌지도과	그린마켓 행사장 조성	35	-35	0	
농촌지도과	농업현장 애로사항 기술보급	20	-10	10	
농촌지도과	양파생산 기계화 기술보급	30	-28	2	
농촌지도과	억대 농업인 육성 지원사업	120	-42	78	
농촌지도과	농업인의 날 행사	50	-10	40	
농촌지도과	달성 도시농업 봄나들이 한마당 운영	20	-20	0	
농촌지도과	가공상품 품평회 및 박람회 참석	10	-10	0	
농촌지도과	농식품 가공 제품개발 용역	40	-20	20	

부서명	사업명	2020년도 본예산	증감액	2020년도 제2회	비고
농촌지도과	생활개선회 한마음 실천교육	20	-20	0	
농촌지도과	4-H회 3대 교육행사	23	-13	10	
농촌지도과	농업인 해외연수	65	-65	0	
의회사무국	2020 대구경북 지방의회 박람회	38	-38	0	
화원읍	군민의 날 행사 지원	30	-30	0	
논공읍	군민의 날 행사 지원	30	-30	0	
다사읍	청사 보수 및 리모델링 공사	0	10	10	
다사읍	강정 다색 영화제 운영	30	-30	0	
다사읍	주민자치센터 전문강사료	74	-43	31	
다사읍	행복생활문화센터 전문강사료	21	-12	9	
다사읍	어르신 힐링 웃음교실 강연료	10	-10	0	
다사읍	군민의 날 행사 지원	30	-30	0	
유가읍	군민의 날 행사지원	30	-30	0	
옥포읍	청사 회의실(3층) 천장 교체 공사	0	18	18	
옥포읍	청사 회의실(3층) LED 전등 교체 공사	0	8	8	
옥포읍	주민자치센터 전문강사료	98	-60	38	
옥포읍	군민의 날 행사 지원	30	-30	0	
현풍읍	군민의 날 행사지원	30	-30	0	
가창면	군민의 날 행사지원	30	-30	0	
하빈면	환경공무직 대기실 리모델링	30	-12	18	
하빈면	군민의 날 행사 지원	30	-3	0	
구지면	군민의 날 행사 지원	30	-30	0	

5. 주요내용

□ 예산규모

-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9,380억원 보다 666억원(증 7.10%)이 증가된 1조46억원으로
-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9,290억원 보다 664억원이 증액된 9,954억원이며,
- 특별회계는 2억원이 증액된 92억원입니다.

□ 주요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지방세 수입 170억원, 세외수입 23억원, 특별교부세 11억원, 조정교부금 10억원, 국·시비보조금 500억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보통교부세는 내국세 감소분 조정에 따른 52억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6천3백만원, 보조금 1억1천만원 등 총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면,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행사 및 워크숍 등 취소된 경비와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비 등 197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 당면 현안사업 및 필수지원경비로 청년창업지원센터 건립 토지매입비 7억원, 부리 어린이공원 조성 보상비 17억원, 교통시설물 등 설치비 4억 5천만원 등 총164억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도로정비 사업 63건과 하천·수리시설 및 농로정비사업 13건에 대하여 각종 보상금 및 공사비 부족분으로 14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대구희망지원금 258억원, 희망일자리 사업 88억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금 43억원 등을 총 459.8억원을 계상하였으며,
- 국·시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다사체육공원 생활체육센터 건립 21억원, 스마트 플랫폼 구축 13억5천만원, 달성테크노스포츠센터 건립 3억원 등 총 4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전년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총49억원을 계상하였고,
- 예비비는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위하여 75억2천만원을 추경재원으로 반영하였습니다.
- 특별회계는 폐기물처리시설사업 7천만원, 취약계층 의료급여 관리 사업 1억원, 치수사업 및 기타 지출 3천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 종합검토의견

-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9천3백8십억원보다 666억원 증액된 1조46억원으로,
- 세입부문에서는 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추가로 교부되거나 징수된 지방 교부세, 조정교부금, 국·시비 보조금과 지방세 수입 등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하여 금회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으며,
-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추가재원을 대부분 코로나19에 따른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활용하고 당면현안 사업과 각종 사업 보상비로 사용하는 등 전반적으로 합리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I. 개 요

1. 제 출 일 : 2020년 9월 25일

2. 제 출 자 : 김정태 의원, 최상국 의원

3. 제안사유

- 환경부의 「환경미화원 작업안전지침」(2019. 3.)에 따라 환경공무직의 신체적 재해방지 등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쓰레기봉투의 무게를 제한하였고,
-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으로 생활폐기물배출의 분리·보관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법령으로 위임된 문구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을 신설하여
-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배출시 쓰레기봉투의 무게 제한 신설(안 제5조 제5항)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을 신설(안 제12조의2)
-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의 설치기준 개정(안 제15조 제2항)

5. 관계법령

- 관계법령
 - 폐기물관리법 제15조제2항

II.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 환경공무직의 신체적 재해방지등 노동개선과 생활폐기물 배출의 분리·보관, 수집·운반 등 안전기준 신설
-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사항으로는

- 안 제5조제5항 배출시 쓰레기봉투의 무게제한 신설 사항
- 안 제12조의2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신설에 관한 사항
- 안 제15조제2항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의 설치기준 개정에 관한 사항

○ 위와 같이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타당 하다고 판단됩니다.

- 붙임 1) 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관련 법령 1 부. 끝.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배출되는 쓰레기봉투의 무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제한할 수 있다.

1. 100 l : 25kg 이하
2. 75 l : 19kg 이하
3. 50 l : 13kg 이하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① 군수는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안전기준(이하 “안전기준”이라 한다)을 준수해야 한다.

②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 각 목의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될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주민 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소각·매립 등 처리시설 반입시간대와 처리시설로의 운반거리 등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3.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및 유해요인조사 방법에 관한 고시 제3조(근골격계부담작업)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작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4. 자동상차장치 부착 청소차량, 진공흡입청소차량, 집게차량 등 특수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5. 적재중량이 1톤 이하의 차량 등을 사용하는 경우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5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관시설 등을 설치하게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보관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가. 보관시설 등은 수집·운반장비에 적합한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나. 보관시설 등의 용량을 충분히 하여 폐기물이 넘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재활용가능폐기물 보관시설 등은 종이류, 병류, 캔류, 플라스틱류, 고철류, 비닐류, 폐형광등 및 그 밖의 것으로 각각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도록 제작·비치하여야 한다.

라. 그 밖에 보관시설 등의 설치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주택 사업 시행자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다가구주택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보관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경계에서 외벽 사이의 거리가 60cm미만의 주택은 제외한다.

가.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사이즈는 가로 400mm×세로 400mm×높이 900mm 이상으로 1대 이상 설치

나. 재활용가능폐기물 보관시설 사이즈는 가로 400mm×세로 400mm×높이 900mm 이상으로 3대 이상 설치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폐기물의 배출방법 등) ① ~ ④ (생 략) <u><신 설></u>	제5조(폐기물의 배출방법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u>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배출되 는 쓰레기봉투의 무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제한할 수 있다.</u> <u>1. 100ℓ : 25kg 이하</u> <u>2. 75ℓ : 19kg 이하</u> <u>3. 50ℓ : 13kg 이하</u>
<u><신 설></u>	<u>제12조의2(생활폐기물 수집·운 반 관련 안전기준 등) ① 군수 는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안전기준(이하 “안전기준” 이라 한다)을 준수해야 한다.</u> <u>②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 호 각 목의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될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u> <u>1.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주민 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u> <u>2. 소각·매립 등 처리시설 반 입시간대와 처리시설로의 운 반거리 등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u>

제15조의2(생활폐기물보관시설 등의 설치) ① (생 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 시설 등을 설치하게 할 때에는 분리수집이 쉬운 구조와내구성이 있는 재질이어야 하며, 수집·운반장비에 적합한 기계적 상차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및 유해요인조사 방법에 관한 고 시 제3조(근골격계부담작업)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작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4. 자동상차장치 부착 청소차량, 진공흡입청소차량, 집게차량 등 특수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5. 적재중량이 1톤 이하의 차량 등을 사용하는 경우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5조의2(생활폐기물보관시설 등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보관시설 등을 설치하게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보관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가. 보관시설 등은 수집·운반장비에 적합한 기계식상차가 가능하도록 만들어

야 한다.

나. 보관시설 등의 용량을 충분히 하여 폐기물이 넘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재활용가능폐기물 보관시설 등은 종이류, 병류, 캔류, 플라스틱류, 고철류, 비닐류, 폐형광등 및 그 밖의 것으로 각각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도록 제작·비치하여야 한다.

라. 그 밖에 보관시설 등의 설치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주택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다가구주택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보관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경계에서 외벽 사이의 거리가 60cm미만의 주택은 제외한다.

가.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사

③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은 가연성, 불연성, 재활용으로 구분·보관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재활용품 보관시설 등은 공동주택의 경우 종이류, 병류, 고철·캔류, 플라스틱류, 의류, 필름류, 폐형광등, 폐건전지 등으로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도록 제작·비치하여야 한다.

이르는 가로 400mm×세로 400mm×높이 900mm 이상으로 1대 이상 설치

나. 재활용가능폐기물 보관시설 사이즈는 가로 400mm×세로 400mm×높이 900mm 이상으로 3대 이상 설치

<삭 제>

□ 폐기물관리법**제15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

② 생활폐기물배출자는 제1항에 따라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의 분리·보관에 필요한 보관시설을 설치하고, 그 생활폐기물을 종류별, 성질·상태별로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에서는 분리·보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① 법 제14조의5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이하 “안전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해야 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2.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대행받은 업체가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1. 청소차량에 다음 각 목의 장치를 모두 설치·운영할 것
 - 가. 청소차량에 의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후방영상장치
 - 나. 비상시 환경미화원이 적재 장치의 작동을 제어할 수 있는 안전멈춤바 및 양손 조작방식의 안전스위치
2. 안전화, 안전조끼, 장갑 등 보호장구를 환경미화원에게 지급할 것
3.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할 것. 다만,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주민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가. 주간작업을 원칙으로 할 것
 - 나. 3명(운전자를 포함한다)이 1조를 이루어 작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
 - 다. 폭염·강추위, 폭우·폭설, 강풍, 미세먼지 등으로부터 환경미화원의 건강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작업시간 조정 및 작업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대구광역시 달성군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I. 개 요

1. 제 출 일 : 2020년 9월 25일

2. 제 출 자 : 이대곤 의원, 김정태 의원

3. 제안사유

- 달성군의 다중이용시설,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와 건강취약계층의 실내건강복지를 증진하기 위함.

4.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 적용범위 및 군수의 책무(안 제3조 ~ 제4조)
-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등, 실내공기질 측정, 신축공동주택의 실내 공기질 관리(안 제5조 ~ 제7조)
- 보고 및 검사, 개선명령, 지원 등(안 제8조 ~ 제10조)

5. 관계법령

- 관계법령
 -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4조

Ⅱ.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 달성군의 다중이용시설,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와 건강취약계층의 실내건강복지를 증진하기 위함.

○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사항으로는

- 안 제1조 ~ 제2조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 안 제5조 ~ 제7조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측정과 신축공동주택의 실내공기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안 제8조 ~ 제10조 보고 및 검사, 개선명령, 지원에 관한 사항

○ 위와 같이 “대구광역시 달성군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타당 하다고 판단됩니다.

붙임 조례안 1부. 끝.

대구광역시 달성군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의 다중이용시설,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와 건강취약계층의 실내건강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강취약계층”이란 신체적 특성상 실내환경으로 인한 건강상의 영향을 크게 받을 우려가 있는 사회계층 중 특히 어린이·노약자·임산부 등 지속적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계층을 말한다.
2. “실내공기질 개선 지원”이란 실내공기 환경기준 유지를 목적으로 실시하는 지원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소재한 「실내공기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신축 공동주택에 적용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중이용시설,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관리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등) ①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다중이용시설 내부의 공기질을 쾌적하게 유지하기 위한 기준에 맞게 그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제6조(실내공기질의 측정) ①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은 그 시설의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른 자에게 측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할 경우 측정대상 오염물질, 측정횟수 그 밖에 실내공기질의 측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 제11조에 따른다.

제7조(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 ①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시공이 완료된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그 측정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고, 입주 개시 전에 입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할 경우 측정방법, 측정항목, 측정결과의 제출·공고시기·장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 제7조에 따른다.

제8조(보고 및 검사) 군수는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 또는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에게 해당 다중이용시설 또는 신축되는 공동주택에 출입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서류 및 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개선명령) 군수는 다중이용시설이 제5조제2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관리되는 경우에는 규칙 제8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에게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 등의 개선이나 대체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제10조(지원) ① 군수는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의 적절한 유지·관리 및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실내공기질 오염 예방 및 개선에 관한 교육·홍보 및 정보제공
 2.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산후조리원 등 건강취약계층이 생활하는 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오염예방 사업(공기정화설비 설치 등)
 3. 그 밖에 실내공기질 오염 예방, 관리 및 개선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제3조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건강취약계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규모 미만인 다중이용시설에 관한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③ 군수는 건강을 위협하는 생활방사선으로부터 안전을 지키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라돈측정기를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 및 주민 등에게 대여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 검 토 보 고

I. 개 요

1. 제 출 일 : 2020년 9월 25일

2. 제 출 자 : 이대곤 의원, 서도원 의원

3. 제안사유

- 환경교육 활성화를 통하여 군민 스스로 일상생활에서 환경보전을 실천하고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이루며 달성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안 제4조)
- 학교환경교육의 지원,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안 제5조 ~ 제6조)
- 재정지원(안 제7조)

5. 관계법령

- 관계법령
 - 환경교육진흥법 제4조

Ⅱ.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 환경교육 활성화를 통하여 군민 스스로 일상생활에서 환경보전을 실천하고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이루며 달성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사항으로는

- 안 제1조 ~ 제2조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 안 제4조 ~ 제6조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학교환경교육의 지원,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 안 제7조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 위와 같이 “대구광역시 달성군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타당 하다고 판단됩니다.

붙임 조례안 1부. 끝.

대구광역시 달성군 환경교육 진흥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교육진흥법」이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군 차원에서 추진하기 위하여 환경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교육 활성화를 통하여 군민 스스로 일상생활에서 환경보전을 실천하고,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이루며 대구광역시 달성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교육”이란 「환경교육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2. “학교환경교육”이란 「환경교육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교육을 말한다.
3. “사회환경교육”이란 학교환경교육을 제외한 환경교육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민간의 활동을 지원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군민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이 추진하는 환경교육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환경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할수 있다.

② 환경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교육의 추진목표와 방향
2.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3. 학교 및 사회환경교육의 교류 및 협력 등 활성화 방안
4. 환경교육계획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학교환경교육의 지원) 군수는 유치원장 및 학교장과 협의하여 학교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에서의 환경교육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교육
3. 학교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체험 및 현장 환경교육의 활성화
5. 학교 환경동아리 활동 지원
6.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한 사항

제6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군수는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사회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공공기관, 기업 및 사회단체 등의 사회환경교육 활성화
3. 사회환경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4. 사회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
5.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사업

제7조(재정지원) 군수는 환경교육센터와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기관·단체에 환경교육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평생학습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I. 개 요

1. 제 출 일 : 2020년 9월 25일

2. 제 출 자 : 김보경 의원, 최상국 의원

3. 제안사유

- 군민의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고 평생학습 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4.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 기본원칙, 경비 보조 및 지원(안 제3조 ~ 제4조)
- 평생교육협의회 구성, 평생학습관 운영(안 제5조 ~ 제17조)

5. 관계법령

- 관계법령
 - 평생교육법

Ⅱ.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평생학습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본 조례의 전부개정이유는

- 군민의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고 평생학습 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사항으로는

- 안 제1조 ~ 제2조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 안 제5조 ~ 제17조 평생교육협의회 운영, 평생학습관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 위와 같이 “대구광역시 달성군 평생학습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타당 하다고 판단됩니다.

붙임 조례안 1부. 끝.

대구광역시 달성군 평생학습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평생학습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군민의 평생 교육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평생교육”이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활동을 말한다.
2. “평생교육기관”이란 법 제2조제2호 각목에 해당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평생교육사”란 법 제2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자격을 부여받고,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4. “평생학습도시”란 지역사회 및 지역주민의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부장관에 의해 지정된 도시를 말한다.
5. “문자해득교육”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평생교육을 통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며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이면 언제 어디서 누구나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모든 군민에게 평생교육의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소속 기관이나 시설,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예산을 지원받는 기관·단체 및 시설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하고, 그 기관·단체 및 시설의 장은 평생교육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경비보조 및 지원)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진흥 사업을 실시하거나 또는 그 사업을 실시하는 제3조제3항에 따른 기관·단체 및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평생교육기관의 등록·지원
2. 평생교육사의 양성 및 배치
3.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4.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5. 주민의 평생교육 참여 촉진을 위한 사업
6.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에 관련된 행사의 개최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소속 직원의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유급 또는 무급의 학습휴가를 실시하거나 도서비·교육비·연구비 등 학습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원된 경비의 관리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장 평생교육협의회

제5조(설치) 평생교육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고 평생교육 진흥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군에 대구광역시 달성군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하거나 심의 또는 군수의 자문 역할을 수행한다.

1. 평생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평생교육에 대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구성 및 임기)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성별구성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8조를 준용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평생교육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1명
2. 대구광역시달성교육지원청의 관계 공무원
3. 평생교육 전문가
4.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
5. 군지역 내 평생교육 기관의 운영자
6. 평생교육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7. 그 밖에 군수가 협의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⑥ 협의회는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평생교육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⑦ 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그 안건에 대한 제6조에 따른 기능이 종료하면 자동 해산한다.

제8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는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수당 등) 협의회 회의에 달성군 공무원이 아닌 위원 또는 관계전문가가 출석하였을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평생학습관

제10조(설치 및 지정) ① 군수는 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을 설치 또는 지정, 운영할 수 있다.

② 평생학습관은 군 관할 구역 내에 둔다.

제11조(기능)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평생교육 정책개발과 연구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3.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4. 평생교육 관련 기관·단체 및 시설의 연계·지원
5. 평생교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6. 평생교육 관련 실무자에 대한 교육과 연수
7. 자율적인 평생학습 동아리 육성
8. 문자해득교육의 지원
9. 읍·면 단위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운영 지원 및 관리
10.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읍·면 평생학습센터의 운영) ① 군수는 읍·면별 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평생학습 상담을 제공하는 읍·면 단위 평생

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읍·면 단위 평생학습센터는 주민의 근거리 학습권 보장을 위해 지역사회 수요에 맞는 프로그램 및 지역자원 등을 발굴·연계하여 운영한다.

제13조(운영 등) ① 평생학습관은 군수가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시 교육 문화 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학교법인에게 평생학습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평생학습관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 수탁기관의 선정, 운영지원 등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평생학습관장, 평생교육사, 마을평생교육지도자 등의 필요한 직원 등을 둘 수 있으며, 군수는 필요시 자원봉사자를 모집·활용할 수 있다.

④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와 급량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수강료의 징수 등) ① 군수는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이용자로부터 재료비 등 실비의 범위에서 수강료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강료는 프로그램의 종류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한다.

제15조(수강료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가족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5.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가족
6.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
7.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8.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9.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은 이를 중복하여 감면받을 수 없다.

제16조(지도·감독 등) ① 군수는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평생학습관의 운영 수탁자에게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하여 지도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지정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생학습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개월 이상 제11조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협의회가 의결로써 평생학습관의 지정 취소를 요구한 때
3. 그 밖에 군수의 정당한 요구에 불응한 때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용미생물 등의 보급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I. 개 요

1. 제 출 일 : 2020년 9월 25일

2. 제 출 자 : 신동윤 의원, 이대곤 의원

3. 제안사유

- 유용미생물 원액 및 배양액 등을 주민 및 지역사회에 보급하고 교육·홍보함으로써 깨끗한 생태하천 및 주변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 무상보급(안 제3조)
- 활동계획서 제출, 점검조사, 공급제한 (안 제4조 ~ 제6조)
- 위탁운영(안 제7조)

5. 관계법령

- 관계법령
 - 물환경 보전법

Ⅱ.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용미생물 등의 보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 유용 미생물 원액 및 배양액 등을 주민 및 지역사회에 보급하고 교육·홍보함으로써 깨끗한 생태하천과 주변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

○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사항으로는

- 안 제1조 ~ 제2조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 안 제3조 무상보급에 관한 사항
- 안 제4조 ~ 제6조 활동계획서 제출, 점검 조사, 공급제한에 관한 사항
- 안 제7조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 위와 같이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용미생물 등의 보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타당 하다고 판단됩니다.

붙임 조례안 1부. 끝.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용미생물 등의 보급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용 미생물 원액 및 배양액 등을 주민 및 지역사회에 보급하고 교육·홍보함으로써 깨끗한 생태하천과 주변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용 미생물(EM: Effective Micro-organisms)”이란 인류가 오래 전부터 식품의 발효 등에 이용해 왔던 유익한 미생물 수십 종을 조합하여 배양한 것을 말한다.
2. “유용 미생물 원액”이란 효모균, 유산균, 누룩균, 광합성균, 방선균 등 80여 종 미생물의 복합체로 유용미생물 배양액을 만들기 위한 원료(종균)를 말한다.
3. “유용 미생물 배양액”이란 유용 미생물 원액을 유용 미생물 배양 공법을 이용하여 발효시켜 액상으로 만든 실체를 말한다.

제3조(무상보급)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유용 미생물 원액·배양액·홍보물품(이하 “유용 미생물 원액 등”이라 한다)을 주민과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각종 기관, 법인, 단체(이하 “기관 등”이라 한다)에 무상으로 보급할 수 있다.

1. 유용 미생물 배양액 제조 및 사용에 대한 주민 교육·홍보에 필요한 경우
2. 오염된 생활하수 및 하천수질 정화·개선에 필요한 경우
3. 친환경 공공사업에 필요한 경우

4. 학교,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서 친환경 체험학습을 위하여 요청한 경우
5. 그 밖에 환경보전 및 쾌적한 환경 개선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활동계획서 등 제출) ① 제3조에 따라 군수로부터 유용 미생물 원액 등을 제공받으려는 주민과 기관 등은 사전에 활동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활동계획서가 제출되면 군수는 적정 보급량을 산정하여 유용 미생물 원액 등을 공급하고, 주민과 기관 등은 활동계획서 상의 목적으로만 유용 미생물 원액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유용 미생물 원액 등을 제공받은 주민과 기관 등은 사업이 종료되면 그 종료 후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활동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점검·조사)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유용 미생물 원액 등을 제공 받은 주민과 기관 등에 대하여 그 적정한 사용 여부를 점검 또는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6조(공급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용 미생물 원액 등의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3조 각 호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유용 미생물 원액 등을 판매하는 등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 공급량의 한계로 공급이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공급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유용 미생물 원액 등의 보급 사업에 관한 사무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I. 개 요

1. 제 출 일 : 2020년 9월 25일

2. 제 출 자 : 도일용 의원, 김보경 의원, 김은영 의원

3. 제안사유

- 달성군의 지역 간 균형있는 발전을 통하여 군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고 군민의 균등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 지원대상지역 및 특화사업의 선정(안 제3조)
- 기본계획의 수립, 시행계획의 수립·평가, 지원사업의 추진
(안 제4조 ~ 제5조)
- 균형발전심의위원회의 설치, 위원회 기능, 구성, 회의, 수당
(안 제6조 ~ 제11조)

5. 관계법령

- 관계법령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Ⅱ.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 달성군의 지역 간 균형있는 발전을 통하여 군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고 군민의 균등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사항으로는

- 안 제1조 ~ 제2조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 안 제3조 지원대상지역 및 지역특화사업의 선정에 관한 사항
- 안 제4조 ~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시행계획의 수립·평가,
지원사업이 추진에 관한사항
- 안 제6조 ~ 제11조 균형발전심의위원회 설치, 위원회 기능, 위원회
구성, 위원회 회의,수당 등에 관한 사항

○ 위와 같이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타당 하다고 판단됩니다.

붙임 조례안 1부. 끝.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달성군의 지역 간 균형있는 발전을 통하여 군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고 군민의 균등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역균형발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균형발전”이란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지역 간 발전기회를 균등하게 부여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개발을 통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2. “지원대상지역”이란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제3조에 따라 선정된 읍·면을 말한다.
3. “지역특화사업”이란 지역특성과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발전에 필요한 사업으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지역 및 지역특화사업 선정) 군수는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지역과 지역특화사업을 선정한다. 다만, 지역 간 격차에 따라 지원액과 우선순위를 조정할 수 있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군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하여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전에는 “달성군 장기발전계획”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지역 간 격차 실태분석

2. 지역 특성에 맞는 개발의 기본방향 및 중장기 목표
3. 지리적 특성과 문화적 전통을 고려한 개발계획
4. 주거·교육·문화·복지·산업·경제·환경·재정·기반시설 등 분야별 추진 전략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정비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 읍·면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평가)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대한 연도별 지역균형발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 읍·면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지역특화사업
2. 지역개발사업
3. 주민숙원사업
4. 문화복지사업
5. 그 밖에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④ 군수는 매년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주변 여건 변화 및 관계 법령 등 변경사항을 고려한 결과를 다음년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사업의 추진) 군수는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확정된 사업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균형발전심의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지역균형발전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달성군 균형발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지역균형발전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원 대상지역 및 지역특화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제5조제3항 각 호 사업의 추진에 따른 사업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위원의 성별구성에 관하여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8조를 준용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기획예산실장, 정책사업과장, 건설과장, 복지정책과장, 교통과장, 도시과장
2. 위촉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 가. 달성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 나. 지역개발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군수는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⑦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제10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달성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I. 개 요

1. 제 출 일 : 2020년 10월 6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

3. 제안사유

- 회계·기금 간 여유자금을 예탁 및 예수할 수 있는 통합계정을 신설하여 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달성군 통합안정화기금’을 설치하여 재정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안 제1조)
- 통합기금의 계정 구분(안 제2조)
- 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안 제3조)
- 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안 제4조)
- 통합기금의 관리·운용, 이자, 운용심의, 회계공무원(안 제5조 ~ 제8조)

5. 관계법령

-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9조의 2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

Ⅱ.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본 조례의 전부개정이유는

- 회계·기금 간 여유자금을 예탁 및 예수 할 수 있는 통합계정을 신설하여 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달성군 통합안정화기금을 설치하여 재정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하고자 함.

○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사항으로는

- 안 제1조 목적에 관한 사항
- 안 제2조 통합기금의 계정 구분에 관한 사항
- 안 제3조 ~ 제4조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에
관한 사항
- 안 제5조 ~ 제8조 통합기금의 관리·운용, 이자, 운용심의, 회계공무원에
관한 사항

○ 위와 같이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타당 하다고 판단됩니다.

붙임 1)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끝.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달성군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달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합기금의 계정구분) 달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한다.

제3조(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 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제4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재정안정화계정은 세입 및 결산상 잉여금 등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재원으로 한다. 다만,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은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1항에 따른 전입금으로 하여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군수가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지방세 세입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1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3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직전 회계연도 경상일반재원 세입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1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3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3.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2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4. 그 밖에 군수가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③ 동일 회계연도에 제2항의 각 호 요건이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금액이 큰 항목을 선택하여 적립할 수 있다.

④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1.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의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공공청사 및 문화체육시설 등의 신축 및 증축 등 대규모 사업의 경비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7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용도

5.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

⑤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계정 적립금 총액의 80%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제4항제5호에 따라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5조(통합기금의 관리·운용) 군수는 통합기금을 군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제6조(이자) ① 군수는 국·공채 이자율 수준, 군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예탁·예수에 대한 이자율을 정하여야 한다.

②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별로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7조(통합기금의 운용심의) ① 통합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달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통합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통합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통합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
5. 통합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군수가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심의위원회의 기능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제8조(회계공무원) ① 통합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통합기금 담당 부서장
2. 기금출납원 : 통합기금 담당 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통합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통합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되, 각종 대장의 기능을 전산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전산입력 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존속기한)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금이체) 개정 전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조성된 달성군 재정안정화기금의 자금은 이 조례 제4조에 따른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이체하되, 금융기관 정기예금계좌에 예치된 자금의 이체는 그 계좌 만기일을 기준으로 한다.

□ 지방재정법

제9조의2(회계·기금 간 여유재원의 예수·예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 또는 조례에도 불구하고 회계 및 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회계와 기금 간, 회계 상호 간 그리고 기금 상호 간에 여유재원 또는 기금 예치금을 예탁하거나 예수하여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을 예산 또는 기금운용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여유재원의 예탁 및 예수와 기금 예치금의 예탁 및 예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 간의 재정 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 또는 각종 회계·기금 운용 상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통합기금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이 조에서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③ 통합 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④ 재정안정화 계정은 세입 및 결산상 잉여금 등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재원으로 한다. 다만,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은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⑤ 재정안정화 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회계로의 전출

2. 지방채 원리금 상환

⑥ 지방자치단체가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금 총액 중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기금의 조성, 용도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검 토 보 고

I. 개 요

1. 제 출 일 : 2020년 10월 6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

3. 제안사유

- 인구정책의 기본방향, 추진체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구정책 추진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근거 조례를 마련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1조 ~ 제4조)
- 인구정책 시행계획, 인구정책 사업, 지원(안 제5조 ~ 제7조)
- 인구교육 및 홍보(안 제8조)
- 조사 및 연구, 포상(안 제9조 ~ 제11조)

5. 관계법령

- 관계법령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Ⅱ.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 인구정책의 기본방향, 추진체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구정책추진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근거 조례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사항으로는

- 안 제1조 ~ 제4조 조례의 목적, 정의, 책무, 다른 조례와 관계에 관한 사항
- 안 제5조 ~ 제7조 인구정책 시행계획, 인구정책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 안 제8조 인구교육 및 홍보에 관한사항
- 안 제9조 ~ 제11조 조사 및 연구, 포상에 관한 사항

○ 위와 같이 “대구광역시 달성군 인구정책 기본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 타당 하다고 판단됩니다.

붙임 1)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끝.

대구광역시 달성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 인구정책의 기본방향과 계획의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지역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인구정책”이란 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변동을 예측하여 그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수립·시행하는 정책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을 말한다.

1.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2. 일자리·교육·주택·교통·문화·복지 등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
3. 그 밖에 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인구 증가를 장려하기 위한 정책

제3조(군수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의 실정에 부합하는 인구정책 과제를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인구 구조 불균형이 초래하는 사회적 문제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구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구정책과 관계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인구정책 시행계획) ① 군수는 법 제21조에 따라 인구정책 시행계획을 연도별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정책의 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인구정책 사업 및 시책의 발굴·추진에 관한 사항
3. 인구교육·홍보 등 군민의 인식개선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6조(인구정책 사업) ① 군수는 인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결혼 지원 사업
2. 임신·출산·양육·주거 지원 사업
3. 다자녀가정 지원 사업
4. 일·가정 양립을 위한 가족친화 및 성평등한 사회 환경 조성 사업
5. 노인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및 여가·사회활동 참여 지원 사업
6. 인구정책 발굴을 위한 조사, 연구 및 공모에 관한 사업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구정책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 수행 사무를 전문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인구정책 지원) ① 군수는 인구정책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사업 수행에 필요한 행·재정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인구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군민이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결혼·출산·양육 및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인구교육, 성인지 교육 등 다양한 인식 개선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사업 수행

사무를 전문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인구정책에 대한 인식개선과 인구정책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 물품 등을 제작·배부할 수 있다.

제9조(조사 및 연구 등) ① 군수는 지역 실정에 맞고 효과적인 인구정책을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연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및 연구 등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그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준용) 제6조제2항, 제8조제2항 및 제9조제2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과 관련해서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포상) 군수는 인구정책 추진을 위하여 노력한 군민, 공무원 및 단체 등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구의 고령화”라 함은 전체인구에서 노인의 인구비율이 증가하는 현상을 말한다.
2.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이라 함은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수립·시행하는 정책을 말한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종합적인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중·장기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 주요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가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 관계되는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인구정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적정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변동을 예측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한 인구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의2(인구교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결혼·출산 및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인구교육을 활성화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1조(연도별 시행계획)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별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 및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29조(조사 및 연구)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조사연구기관을 설치하거나 연구소·대학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에

조사 및 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제3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①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도별 시행 계획 (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수립·시행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시행 계획 수립지침을 정하여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소관별로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행계획의 내용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반의 설치와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I. 개 요

1. 제 출 일 : 2020년 10월 6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

3. 제안사유

- 구지면 내 신설 아파트 입주로 인한 행정리 분리·신설과 이장정수 및 반 수의 증가
 - 국가산단반도유보라아이비파크3.0 775세대(1개리, 8개반) : '20. 11. 예정
 - 국가산단영무예다음 934세대(1개리, 12개반) : '20. 12. 예정
- 구지면 응암7리(반도유보라아이비파크2.0)의 동 표기 방식이 변경되어 실제 주소와 조례를 통일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리·반 조정 : 2개리 23개반 신설, 4개반 폐지
(317리 ⇨ 319리, 2,720반 ⇨ 2,739반)
- 이장정수 : 증 2(구지면 창5리, 화산2리)

5. 관계법령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Ⅱ.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반의 설치와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 구지면 내 신설 아파트 입주로 인한 행정리 분리·신설과 이장정수 및 반 수의 증가
- 국가산단반도유보라아이비파크3.0 775세대(1개리, 8개반) : ‘20. 11. 예정
- 국가산단영무예다음 934세대(1개리, 12개반) : ‘20. 12. 예정
- 구지면 응암7리(반도유보라아이비파크2.0)의 동 표기 방식이 변경되어 실제 주소와 조례를 통일하고자 함.

○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사항으로는

- 리·반 조정 : 2개리 23개반 신설, 4개반 폐지에 관한 사항
(317리 ⇨ 319리, 2,720반 ⇨ 2,739반)
- 이장정수 : 증 2(구지면 창5리, 화산2리)에 관한 사항

○ 위와 같이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반의 설치와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타당 하다고 판단 됩니다.

붙임 1) 조례안 1부

2) 신·구 조문 대비표

3) 관할구역 조정 지역 위치도

4) 관계법령. 끝.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반의 설치와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읍·면·리·반의 설치와 명칭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이장정수) 중 구지면란 및 구지면 소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읍 면	법정리명	이장 정수	행정리명
구지면	창 리	5	창1리 창2리 창3리 창4리 창5리
	응암리	7	응암1리 응암2리 응암3리 응암4리 응암5리 응암6리 응암7리
	고봉리	1	고봉리
	가천리	1	가천리
	평촌리	2	평촌1리 평촌2리
	예현리	1	예현리
	유산리	1	유산리
	목단리	2	목단1리 목단2리

	대암리	2	대암1리 대암2리
	내 리	1	내리
	화산리	2	화산1리 화산2리
	수리리	3	수리1리 수리2리 수리3리
	징 리	1	징 리
	오설리	1	오설리
	도동리	2	도동1리 도동2리
구지면 소계	15	32	32

별표3(리·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중 구지면란의 창4리 다음에 창5리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리	반	구 역
창5리	제 1 반	1354번지(국가산단영무예다음) 101동 102호~2403호
	2	1354번지(국가산단영무예다음) 102동 101호~2504호
	3	1354번지(국가산단영무예다음) 103동 102호~2504호
	4	1354번지(국가산단영무예다음) 104동 101호~2504호
	5	1354번지(국가산단영무예다음) 105동 101호~2502호
	6	1354번지(국가산단영무예다음) 106동 102호~2503호
	7	1354번지(국가산단영무예다음) 107동 101호~2004호
	8	1354번지(국가산단영무예다음) 108동 101호~2202호
	9	1354번지(국가산단영무예다음) 109동 102호~2502호
	10	1354번지(국가산단영무예다음) 110동 101호~1904호
	11	1354번지(국가산단영무예다음) 111동 102호~1804호
	12	1354번지(국가산단영무예다음) 112동 101호~1802호

별표3 중 구지면란의 화산리를 다음과 같이 분리·신설한다.

리	반	구역
화산1리	제 1 반	1~153-3
	2	157~413
	3	414~492-1, 565-2~1100, 1106~1128
화산2리	제 1 반	1105번지(국가산단반도유보라아이비파크3.0) 301동 102호~2504호
	2	1105번지(국가산단반도유보라아이비파크3.0) 302동 201호~2302호
	3	1105번지(국가산단반도유보라아이비파크3.0) 303동 201호~2402호
	4	1105번지(국가산단반도유보라아이비파크3.0) 304동 101호~2504호
	5	1105번지(국가산단반도유보라아이비파크3.0) 305동 101호~2504호
	6	1105번지(국가산단반도유보라아이비파크3.0) 306동 101호~2504호
	7	1105번지(국가산단반도유보라아이비파크3.0) 307동 101호~2504호
	8	1105번지(국가산단반도유보라아이비파크3.0) 308동 101호~2504호

별표3 중 구지면란의 응암7리 구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리	반	구역
응암7리	제 1 반	1251(국가산단반도유보라아이비파크2.0) 201동 102호~2504호
	2	1251(국가산단반도유보라아이비파크2.0) 202동 102호~2504호
	3	1251(국가산단반도유보라아이비파크2.0) 203동 102호~2504호
	4	1251(국가산단반도유보라아이비파크2.0) 204동 201호~2404호
	5	1251(국가산단반도유보라아이비파크2.0) 205동 201호~2402호
	6	1251(국가산단반도유보라아이비파크2.0) 206동 101호~2404호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별표2】

이 장 정 수

현 행				개 정 안			
읍 면	법정리명	이장 정수	행정리명	읍 면	법정리명	이장 정수	행정리명
	창 리	4	창1리 창2리 창3리 창4리		창 리	5	창1리 창2리 창3리 창4리 창5리
	응암리	7	응암1리 응암2리 응암3리 응암4리 응암5리 응암6리 응암7리		응암리	7	응암1리 응암2리 응암3리 응암4리 응암5리 응암6리 응암7리
	고봉리	1	고봉리		고봉리	1	고봉리
	가천리	1	가천리		가천리	1	가천리
	평촌리	2	평촌1리 평촌2리		평촌리	2	평촌1리 평촌2리
	예현리	1	예현리		예현리	1	예현리
	유산리	1	유산리		유산리	1	유산리
	목단리	2	목단1리 목단2리		목단리	2	목단1리 목단2리
	대암리	2	대암1리 대암2리		대암리	2	대암1리 대암2리
	내 리	1	내1리		내 리	1	내리
	화산리	1	화산리		화산리	2	화산1리 화산2리
	수리리	3	수리1리 수리2리 수리3리		수리리	3	수리1리 수리2리 수리3리
	징 리	1	징 리		징 리	1	징 리
	오설리	1	오설리		오설리	1	오설리
	도동리	2	도동1리 도동2리		도동리	2	도동1리 도동2리
구지면 소계	15	30	30	구지면 소계	15	32	32

【별표3】

리·반의 명칭 및 관할 구역

현 행				개 정 안			
읍 면	리	반	구 역	읍 면	리	반	구 역
구지면	〈신설〉			구지면	창5리	제1반	1354번지 (국가산단영무예다음) 101동 102호~2403호
						2	1354번지 (국가산단영무예다음) 102동 101호~2504호
						3	1354번지 (국가산단영무예다음) 103동 102호~2504호
						4	1354번지 (국가산단영무예다음) 104동 101호~2504호
						5	1354번지 (국가산단영무예다음) 105동 101호~2502호
						6	1354번지 (국가산단영무예다음) 106동 102호~2503호
						7	1354번지 (국가산단영무예다음) 107동 101호~2004호
						8	1354번지 (국가산단영무예다음) 108동 101호~2202호
						9	1354번지 (국가산단영무예다음) 109동 102호~2502호
						10	1354번지 (국가산단영무예다음) 110동 101호~1904호
						11	1354번지 (국가산단영무예다음) 111동 102호~1804호
						12	1354번지 (국가산단영무예다음) 112동 101호~1802호

현행				개정안			
읍면	리	반	구역	읍면	리	반	구역
구지면	화산리	제1반	414~457	구지면	화산1리	제1반	1~153-3
		2	458~478			2	157~413
		3	479~697, 724~939			3	414~492-1, 565-2~1100, 1106~1128
		4	4~140, 229~316		화산2리	제1반	1105번지(국가산단 반도유보라아이비파크3.0) 301동 102호~2504호
						2	1105번지(국가산단 반도유보라아이비파크3.0) 302동 201호~2302호
						3	1105번지(국가산단 반도유보라아이비파크3.0) 303동 201호~2402호
						4	1105번지(국가산단 반도유보라아이비파크3.0) 304동 101호~2504호
						5	1105번지(국가산단 반도유보라아이비파크3.0) 305동 101호~2504호
						6	1105번지(국가산단 반도유보라아이비파크3.0) 306동 101호~2504호
						7	1105번지(국가산단 반도유보라아이비파크3.0) 307동 101호~2504호
						8	1105번지(국가산단 반도유보라아이비파크3.0) 308동 101호~2504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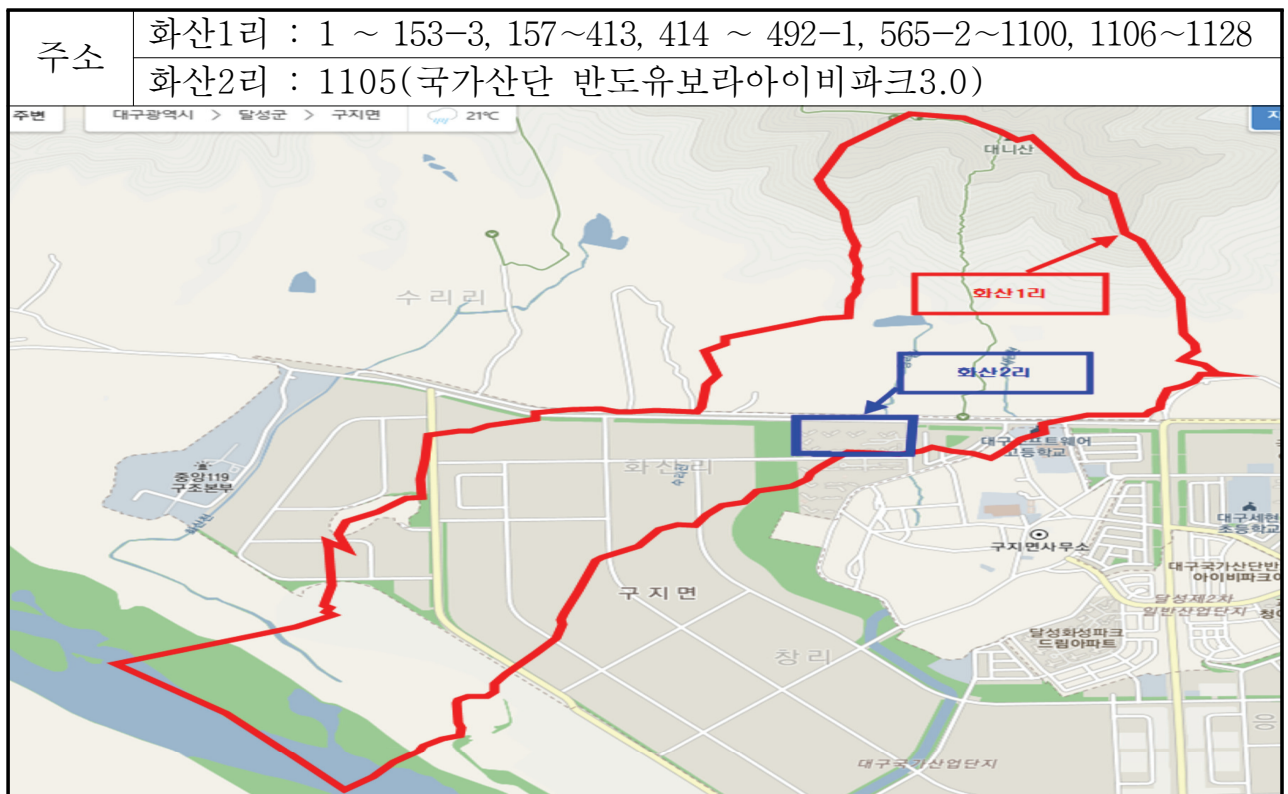
현행				개정안			
읍면	리	반	구역	읍면	리	반	구역
구지면	응암7리	제1반	1251(국가산단 반도유 보라아이비파크2.0) 101동 102호~2504호	구지면	응암7리	제1반	1251(국가산단반도유 보라아이비파크2.0) 201동 102호~2504호
		2	1251(국가산단 반도유 보라아이비파크2.0) 102동 102호~2504호			2	1251(국가산단반도유 보라아이비파크2.0) 202동 102호~2504호
		3	1251(국가산단 반도유 보라아이비파크2.0) 103동 102호~2504호			3	1251(국가산단반도유 보라아이비파크2.0 203동 102호~2504호
		4	1251(국가산단 반도유 보라아이비파크2.0) 104동 201호~2404호			4	1251(국가산단반도유 보라아이비파크2.0 204동 201호~2404호
		5	1251(국가산단 반도유 보라아이비파크2.0) 105동 201호~2402호			5	1251(국가산단반도유 보라아이비파크2.0) 205동 201호~2402호
		6	1251(국가산단 반도유 보라아이비파크2.0) 106동 101호~2404호			6	1251(국가산단반도유 보라아이비파크2.0) 206동 101호~2404호

참고 1 관할구역 조정 지역 위치도

□ 구지면 창5리



□ 구지면 화산1리, 화산2리



참고 2

상위 및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4조의2(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② 리의 구역은 자연 촌락을 기준으로 하되, 그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리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④ 동·리에서는 행정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동·리를 2개 이상의 동·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리를 하나의 동·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동·리(이하 “행정동·리”라 한다)를 따로 둘 수 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I. 개 요

1. 제 출 일 : 2020년 10월 6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

3. 제안사유

- 재난현장에서 체계적인 자원봉사활동을 지원·조정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운영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 조례로 규정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운영 및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단장 임무, 실무팀의 편성, 지원단의 설치 시 고려사항(안 제5조~제7조)
- 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에 관한 사항(안 제9조)

5. 관계법령

-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Ⅱ.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 재난현장에서 체계적인 자원봉사활동을 지원·조정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운영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 조례로 규정하고자 함.

○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사항으로는

- 안 제3조 ~ 제4조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운영 및 기능, 구성에 관한 사항
- 안 제5조 ~ 제7조 단장 임무, 실무팀의 편성, 지원단의 설치 시 고려 사항에 관한 사항
- 안 제8조 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에 관한사항
- 안 제9조 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에 관한 사항

○ 위와 같이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타당 하다고 판단됩니다.

붙임 1)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끝.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대구광역시 달성군수는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운영 및 기능)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역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단이 수행할 업무는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에 따른다.

제4조(구성) ① 지원단은 공동단장 2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원단의 공동단장 중 행·재정 총괄 단장은 자원봉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재난현장 운영 총괄 단장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된다.

③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역대책본부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위촉직 단원의 성별구성에 있어서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8조를 준용한다.

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달성군 (이하 “군” 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
3. 「재해구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
4. 그 밖에 지역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개인

제5조(단장 임무) ① 지원단 단장(이하 “단장” 이라 한다)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제3조 제2항에 따른 업무 범위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실무팀의 편성) 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

1. 상황총괄팀
2. 모집 · 배치팀
3. 활동관리팀
4. 활동지원팀
5.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

② 제1항에 따른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지원단의 설치시 고려사항)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
3. 자원봉사자의 규모

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
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지역대책 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

② 지역대책본부장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제18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해야 한다.

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지역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지역대책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 받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①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 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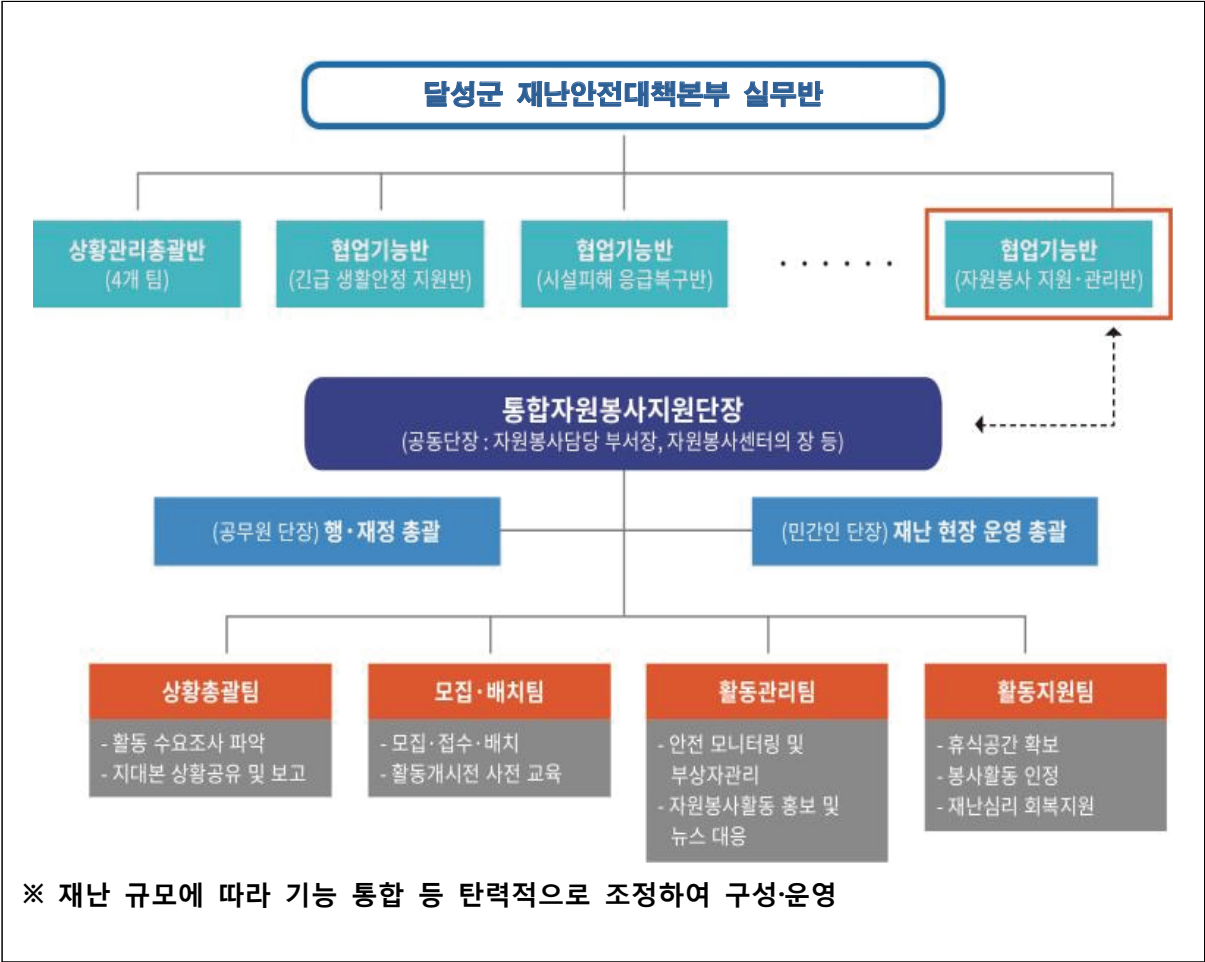
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지원단 운영 편제(제6조제2항 관련)



[별표2]

지원단 운영 업무 구성표(제6조제2항 관련)

팀 명		직 위	담당 사무
공무원단장		자원봉사 담당 부서의 장	▶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관련 행·재정 지원사항 총괄 ▶ 기타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운영 관련 사항 지원
민간인단장		달성군 자원봉사센터장	▶ 재난 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운영총괄
실 무 팀	상 황 총괄팀	달성군 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 재난 현장 자원봉사활동 총괄
		자원봉사 담당부서의 팀장	▶ 재난 자원봉사활동 관련 지원 사항 발굴 ▶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와의 연계 (상황공유·보고 등) ▶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관련 홍보 총괄
	모집· 배치팀	달성군 자원봉사센터 팀장	▶ 자원봉사자 모집·등록·교육·배치 관련 사항 총괄
		달성군 자원봉사센터 교육코디	▶ 자원봉사자 모집·등록·교육·배치 관련 사항 지원
	활 동 관리팀	달성군 자원봉사센터 담당	▶ 재난 현장 자원봉사자 안전 관련사항 총괄 ▶ 자원봉사활동 관련 물품·장비 소요 파악
	활 동 지원팀	달성군 자원봉사센터 전산코디	▶ 자원봉사활동 관련 물품 지원 ▶ 자원봉사자 급·간식 및 편의시설 지원 ▶ 봉사활동 인정(시간 인정, 기부금 확인서 발급 등)

- 제6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팀은 단장이 지역대책본부장과 협의하여 직위 및 담당 사무를 정한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

제17조의2(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 등)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의 효율적 수습을 위하여 지역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원봉사자의 모집·등록
2. 자원봉사자의 배치 및 운영
3.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4. 자원봉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5.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6. 그 밖에 자원봉사 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 관련 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I. 개 요

1. 제 출 일 : 2020년 10월 6일

2. 제 출 자 : 달성군수

3. 제안사유

- 지명을 체계적으로 정리·관리하여 지명 사용에서 발생하는 여러 갈등과 혼란을 방지하고 지명관리업무를 일원화하고 지명위원회를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정비하여 책임성 및 연속성을 확보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지명위원회의 기능, 구성, 임기, 직무, 해촉, 간사에 대한 내용 (안 제2조 ~ 제7조)
- 지명의 조사, 회의, 제안설명(안 제8조 ~ 제10조)
- 회의록 작성, 의견청취, 수당, 운영세칙 (안 제11조 ~ 14조)

5. 관계법령

- 관계법령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Ⅱ. 검토의견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 본 조례의 전부개정이유는

- 지명을 체계적으로 정리·관리하여 지명 사용에서 발생하는 여러 갈등과 혼란을 방지하고 지명관리업무를 일원화하고 지명위원회를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정비하여 책임성 및 연속성을 확보하고자 함.

○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사항으로는

- 안 제2조 ~ 제7조 지명위원회의 기능, 구성, 임기, 직무, 해촉, 간사에 관한 사항
- 안 제8조 ~ 제10조 지명의 조사, 회의, 제안설명에 관한 사항
- 안 제10조 ~ 제14조 회의록 작성, 의견청취, 수당, 운영세칙 관한 사항

○ 위와 같이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타당 하다고 판단됩니다.

붙임 1) 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1부. 끝.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명위원회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조정
2. 관할구역 안의 지명에 관한 조사, 자료의 수집 및 분석
3. 도로, 교량, 터널, 램프, 지하보도, 공원, 광장 등 시설물과 도시철도 역명의 제정, 변경 또는 조정
4.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중요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를 3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지명업무를 관장하는 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지명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장 등 관계공무원

2. 지리·국문학 및 향토사학 등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에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 정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이 되고, 서기는 간사가 지명한다.

제8조(지명의 조사) ① 위원회는 지명 등의 정비를 위하여 필요하면 달성군 안의 지명·시설명 등에 관한 조사·분석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명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

을 포함하여 지명 중 복합 호칭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 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의 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기본도상의 표기오류지명을 조사한다.

③ 인접행정구역 경계상에 위치한 지명 등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 구·군 소속직원 또는 관련 지역 지명위원회의 위원이 공동 참여할 수 있으며, 지명을 공동 조사하는 경우 상급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에 직접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회의소집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안이나 회의 개최가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10조(제안설명) 안건을 제출한 소관 부서장 및 담당은 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야 한다.

제11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의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 요지
5. 그 밖의 중요사항

제12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지명 등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 필요할 경우에는 군수에게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달성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지명의 결정) ① 지명의 제정, 변경과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국가지명위원회를 두고, 시·도에 시·도 지명위원회를 두며, 시·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시·군·구 지명위원회를 둔다.

② 지명은 「지방자치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것 외에는 국가지명위원회의 심의·의결로 결정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결정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시·군·구의 지명에 관한 사항은 관할 시·군·구 지명위원회가 심의·의결하여 관할 시·도 지명위원회에 보고하고, 관할 시·도 지명위원회는 관할 시·군·구 지명위원회의 보고사항을 심의·의결하여 국가지명위원회에 보고하며, 국가지명위원회는 관할 시·도 지명위원회의 보고사항을 심의·의결하여 결정한다.

⑦ 국가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시·도 지명위원회와 시·군·구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의2(위원의 해촉)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87조제3항제6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88조(지방지명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91조제1항에 따른 시·도 지명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시·군·구 지명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시·군·구 지명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관계 공무원 및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시·도 지명위원회에서는 5명 이상으로 하고, 시·군·구 지명위원회에서는 3명 이상으로 한다.

⑤ 시·도 지명위원회의 위원 또는 시·군·구 지명위원회의 위원이 제87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도 지명위원회의 위원은 시·도지사가, 시·군·구 지명위원회의 위원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각각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제89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국가지명위원회, 시·도 지명위원회 및 시·군·구 지명위원회(이하 “지명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해당 지명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지명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0조(회의) ① 위원장은 지명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지명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1조(간사) ① 지명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국가지명위원회에는 간사 2명을 두고, 시·도 지명위원회 및 시·군·구 지명위원회에는 각각 간사 1명을 둔다.

② 국가지명위원회의 간사는 국토지리정보원 및 국립해양조사원의 지명업무 및 해양지명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되며, 시·도 지명위원회 및 시·군·구 지명위원회의 간사는 해당 시·도 또는 시·군·자치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각각 위촉한다.

② 시·도 지명위원회 및 시·군·구 지명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시·도 또는 시·군·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3조(현장조사 등) 지명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명이나 해양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그 밖의 중요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나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5조(보고) 법 제91조제3항에 따른 보고는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결정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96조(운영세칙) 지명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